

#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6. 송선영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4. 20.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화성시 통합방위예규」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던 읍·면·동 지원 본부의 세부사항을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한 체계를 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운영자)

-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균형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반영을 통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4. 20.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행정지원과 김성현)

###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여비 지급 기준을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출장 업무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국내 운임·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안 제4조)
- 국내 운임·숙박비 및 식비 지급표(별표 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6. 오문섭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4. 20.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오문섭 의원)

### 가. 제안이유

-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출범시기 도래에 따라 행정체계 개편 등 시민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출범 준비를 위한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회의 및 분과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수당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시민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특례시 출범 준비를 통한 지역발전의 균등한 향상과 향후 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4. 6. 배현경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4. 20.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배현경 의원)

### 가. 제안이유

-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실효성 있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의 예산 기준과 및 홍보물의 종류를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개 대상 홍보물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호)
- 공개 대상 행사의 예산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예산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물 종류와 공개 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